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공포, 0000.00.00.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

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3조의4제6호의 확약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18조에 따른”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의3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기준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및 별표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험가입 확약서

[농어업인 안전보험]

1. 고용허가 신청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업 종	사업내용

2. **확약내용**

가.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증명서**
 류 사본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다.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동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인)

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 기관	①법인등록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⑤소 재 지		연 락 처	⑥사 무 실	
				⑦휴대전화	
				⑧F A X	
⑨E - mail					
⑩교육가능 인원		연간 교육인원	○ ○ ○ 명		
		1회 교육인원	○ ○ ○ 명		
⑪교육 희망 업종					
지정 기준 충족 여부	⑫인 력 현 황	○ 교육총괄 인력: 0명, 교육시행 인력: 0명 ○ 교육담당 강사: 0명			
	⑬시 설 현 황	○ 행정사무 공간: 00㎡ 00개소 ○ 강의실: 00㎡ 00개소, 00㎡ 00개소.... ○ 기숙사: 00개소(1실 0명), 00개소(1실 0명)... ○ 식당: 00명 수용 가능(00㎡)			
⑭교육사업 운영경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호
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인력 현황 및 교육장별 시설장비현황(각각 첨부서류 제출 필요)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1부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정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사업 운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인력 현황

1. 교육총괄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비고

2. 교육시행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비고

3. 강사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과목	자격	비고

※ 첨부서류

- 이력서
- 강사 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비전임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교육장별 시설장비현황

(단위: 개소, m², 명, 개)

구분 교육 장명	전용 면적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식당		교육장비		비고
		수	면적	근무 인원	수	면적	수용 인원	형태	수	수용 인원	수	면적	장비명	수량	
		계			계			계			계				

※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 대장
- 평면도

지정번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일자:
5. 취업교육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 비고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때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로 감경(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지정취소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3조의4제6호의 확약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의3의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 ④ (생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생략)
<신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신 설>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
정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5서식
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기
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